

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[별표 2]

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(제13조제1항 관련)

구분	금액
1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	40,000원
2.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	15,000원